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14일, 김미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11.)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 3. 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미애의원)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이는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전학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전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호자 모두거나 한부모가정인 경우 이 같은 전학이 사실상 불가함.

이에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이거나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학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7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동찬)

□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제6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¹⁾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는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 ⑤ (생략)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9조제6항

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출석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한편, 초등학교의 전학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서는 “초등학교의 장은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학생의 친권자에 대한 법원에의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 상실 선고 청구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초등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 ~ ⑤ (생략)

⑥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⑧ 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⑨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①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단서 생략)

② ~ ⑤ (생략)

⑥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⑦ (생략)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 ④ (생략)

⑤ 제73조제6항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 이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한 후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령」에 의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해 지자체장 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전학 등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더라도,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전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같이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더라도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취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금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의 목적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인 만큼, 학대 가해자일 수 있는 보호자의 동의를 전학 요건으로 한다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반할 수 있다”고 하여, 학대피해아동이 전학을 통하여 가해자와 분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다고 한 판례

도 있음(전주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나8231 판결).

□ 참고로, 전학 사실 등을 가해자인 부모에게까지 알리지 않고 전학을 간 사례²⁾는 매년 5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부모 미통지 전학 사례 해당 아동학대 피해 학생 수 >

(단위: 명)

교육청	부모 미통지 전학 사례 해당 아동학대 피해 학생 수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 1학기
서울	74	47	41	24
부산	26	37	31	24
대구	37	20	15	14
인천	17	36	29	19
광주	29	28	20	5
대전	6	9	8	8
울산	14	30	16	12
세종	2	4	2	1
경기	76	105	103	66
강원	22	14	25	15
충북	19	20	30	10
충남	43	18	13	17
전북	3	25	26	16
전남	16	34	20	20
경북	55	20	34	18
경남	76	87	94	32
제주	26	23	11	10
합계	541	557	518	311

출처: 진선미의원실, 2025. 10. 4. 보도자료

□ 다만, 금번 개정안은 교육부 소관의 「초·중등교육법령」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인 만큼, 교육부의 의견도 청취할 필요가 있겠음.

2)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례는 현재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초등학교’ 전학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중·고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의 경우 학대피해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령」보다 「아동복지법령」의 취지를 우선하여 전학이 행하여진 사례라고 설명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의원)

친권자등이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시행일을 2026년 8월 4일로 수정함(안 제29조제7항 및 부칙).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 2. 3. 공포되어 같은 해 8. 4. 시행을 앞두고 있음.

개정안은 친권자등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외에 친권자등이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친권자등이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도 본 개정안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9조제7항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2026년 8월 4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 ⑥ (생략) <u><신설></u>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u>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친권자등”이라 한다)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로서 친권자등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u>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u>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친권자등”이라 한다)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로서 친권자등의 동의를</u>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학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언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학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생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u>공포한 날</u>부 터 시행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u>2026년 8월 4일</u>부터 시행한다.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에”를 “제6항 및 제7항에”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친권자등”이라 한다)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태관리대상자인 경우로서 친권자등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 에 대한 지원) ① ~ ⑥ (생 략) <u><신 설></u>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 에 대한 지원) ① ~ ⑥ (현행 과 같음) <u>⑦ 제6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지 원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후 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 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 (이하 이 조에서 “친권자등”이 라 한다)이 모두 아동학대행위 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 자인 경우로서 친권자등의 동 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 하거나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친권자 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 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u>

⑦ 제6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⑧ 제6항 및 제7항에 ----- ----- -----.
--	---